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1. 1 선고 2024가단404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8. 15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60,000원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서창석

별지